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3-38
--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3. 5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개정이유

「지방세기본법」 일부개정(2013. 4. 1. 시행)에 따라 조례에 관허사업 제한 기준금액을 규정하고, 납세자 입장에서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리하도록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지방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관허사업 제한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(안 제15조)

- 관허사업 제한기준을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자 중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로 규정
-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하기 10일전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사전통지
-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결정하면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

나.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 규정 추가  
(안 제51조 제5호 신설)

다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(안 전반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세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### 4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(2013. 4. 18. ~ 5. 8) 결과 : 제출의견 없음

나.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폐영향 자율평가 결과

관련조문	평가기준	검토 결과	조치 결과
• 제50조(심사의결)	이해충돌 가능성	이해충돌 방지장치 마련(권고)	미반영 :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110조(위원의 제척 등)에 이해충돌 방지장치(제척·기피·회피)가 규정되어 있음
• 제51조 (위원의 해촉)	이해충돌 가능성	위원에 대한 사후적 통제장치 미흡(권고)	반영(제51조제5호 신설)

다.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- 성별 구분, 성별 고정관념, 성별 특성 반영 등 개선할 사항이 없음

라. 2013년 제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 (2013.5.14)

마.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기본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「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”을 “「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」”으로 한다.

제7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제10조 후단 중 “통신일부인을 날인받아”를 “접수인을 날인 받아”로 한다.

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하기 10일 전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주무관청이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결정하면 해당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.  
제23조 전단 중 “일시”를 “한꺼번”으로 하고, 같은 조 후단 중 “일시”를 “한꺼번”으로 한다.

제28조 중 “3월”을 각각 “3개월”로 한다.

제29조제1항 중 “2인”을 “2명”으로 한다.

제51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영 제110조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

#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기본조례</p> <p>제1조(목적) 제1조(목적)이 조례는 「지방세기본법」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<u>시행에</u>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</p> <p>제1조(목적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 <u>시행에</u> -----</p> <p>-----.</p>
<p>제3조(적용)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(이하 “구세” 라 한다)의 부과·징수에 관하여 「지방세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,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 이라 한다), 「<u>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</u>」(이하 “<u>시행규칙</u>” 이라 한다)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	<p>제3조(적용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「<u>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</u>」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.</p>
<p>제7조(조례시행에 관한 규칙) 이 조례의 <u>시행에</u>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7조(조례시행에 관한 규칙) --</p> <p>----- <u>시행에</u> -----</p> <p>-----.</p>
<p>제10조(보통우편 송달부)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 법 제30조제6항에 따른 보통우편 송달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이 경우 발</p>	<p>제10조(보통우편 송달부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

송한 우체국의 통신일부인을 날  
인받아 보관하여야 한다.

제15조(허가 등의 제한) 법 제65  
조에 따라 구청장이 주무관청에  
허가·인가·면허·등록·신고  
와 그 갱신허가를 하지 아니할  
것을 요구한 때에는 해당 납세  
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 
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제23조(징수유예등의 취소) 법 제  
84조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취소  
한 경우에는 이에 관련된 구세  
를 일시에 징수하여야 한다. 이  
경우 분할고지를 한 경우에는

----- 접수인  
을 날인 받아 -----  
-

제15조(허가 등의 제한) ① 법 제  
65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 
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 
수 있는 기준은 지방세를 3회  
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  
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  
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  
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  
가 등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 
에는 요구하기 10일 전까지 해  
당 납세자에게 사전에 통지하  
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주무관청이 법 제  
65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  
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결정하  
면 해당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 
통지하여야 한다.

제23조(징수유예등의 취소)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한꺼번-----  
---.

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총금액을 <u>일시에</u> 부과징수하여야 한다.	----- ----- <u>한꺼번</u> -----.
제28조(구세확정전 보전압류) 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 확정 전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한 날로부터 <u>3월</u> 이내에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며, <u>3월</u> 이 경과하도록 납세의무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.	제28조(구세확정전 보전압류) -- ----- ----- ----- <u>3개월</u> ----- ----- ----- <u>3개월</u> ----- ----- -----.
제29조(수색) ①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고 체납자 또는 <u>2인</u> 이상의 참여자와 함께 서명·날인하여야 한다.	제29조(수색) ①----- ----- ----- ----- <u>2명</u> ----- -----.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51조(위원의 해촉)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	제51조(위원의 해촉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질병,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	-----

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때	-----
2.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	-----
3.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때	-----
4. 위원의 품위를 손상한 때	-----
<u>&lt;신 설&gt;</u>	<u>5. 영 제110조에도 불구하고 심 의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</u>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.

#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

- 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#### 3. 미첨부 사유

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#### 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기획재정국 세무1과 이석우
연락처	02-3153-8702